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2 선고 2020나127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9. 22 선고 2020나12755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1015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환, 이경훈

피고, 피항소인B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 선고 2022. 9. 2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합10156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는 원고에게 92,988,15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2.부터 2022. 9.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2,094,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기존의 주위적 청구인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지체상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5,519,6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심판대상인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청구취지가 감축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하였고,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써 위 변경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은 C이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수급인의 지위를 피고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된 공사대금 합계 261,668,154원(= C이 지급받은 선급금 71,780,000원 + 피고가 지급받은 선급금 27,599,000원 +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직불한 공사대금 162,289,154원)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26,148,500원을 공제한 135,519,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준공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이를 임의로 중단하였으며 그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는 데 65일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 16,575,000원(= 공사대금 255,000,000원 × 지연배상금률 0.1% × 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항의 제목을 "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3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액 중 원고가 C에 지급한 선급금 71,78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반환의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한편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은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므로, 피고는 기존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그런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2018. 10. 17.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단한 무렵인 2018. 1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합계 162,289,154원을 직불하고 피고에게 선급 공사대금으로 27,599,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시공한 공사(C의 시공 부분 제외)의 기성고 비율은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 44.5%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합계 189,888,154원(= 162,289,154원 + 27,599,000원)에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당한 공사대금 113,475,000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전체의 공사대금 합계 255,000,000원 × 피고의 기성고 비율 44.5%)을 공제한 76,413,1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을 255,000,000원으로, 지체상금 산정을 위한 지연배상금률을 0.1%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준공기한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상 공사대금 255,000,000원의 0.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준공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이를 임의로 중단하였으며 그 미시공 부분을 완공하는 데 65일이 소요되는 사실 역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지체상금 16,575,000원(= 공사대금 255,000,000원 × 지연배상금률 0.1% × 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체상금의 합계 92,988,154원(= 부당이득금 76,413,154원 + 지체상금 16,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2.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8. 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원고가 감축 및 추가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최승원

판사박성준

판사조미화